

第55回 臨時會 서울特別市 永登浦區議會 行政財務委員會會議錄 第3號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

日 時 : 1998年 3月 4日 (水)
場 所 : 永登浦區議會 第2小會議室

議事日程

- 1. 서울特別市永登浦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2. '98年度主要業務報告의件 [財務局所管]

審査된 案件

- 1. 서울特別市永登浦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永登浦區廳長提出) 1
- 2. '98年度主要業務報告의件 [財務局所管] 6

(10時 14分 開議)

○委員長 金忠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特別市永登浦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永登浦區廳長提出)

○委員長 金忠雄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永登浦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財務局長 金鍾博 財務局長 金鍾博입니다.

존경하는 金忠雄 委員長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6·25이후 최대의 난국이라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 한파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중 장기간 미 조정되었던 원가 이하인 회계관련 증명수수료와 시·구유지 등 신고 그리고 신청에 관한 수수료를 서울시와 일관성있게 조정하여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그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特別市永登浦區手數料徵收條例의 별표사항중 회계관련 증명 수수료

와 시·구유지 신고 및 신청에 관한 6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特別市永登浦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忠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專門委員 李俊石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永登浦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조 종류 및 요액의 별표중에 회계관련 증명인 물품납품실적증명,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증,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 물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과 시유재산 대부신청, 시유재산 매수신청 등의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이는 장기간에 걸쳐 미 조정된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서울시와 일관성있게 조정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2월 23일자 영등포구보 제433호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단 순 수치로 비교해 볼 때 350원을 500원으로, 550원을 95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인상률이 42% 내지 72%로 다소 높아보이나 서울시와

의 형평성 유지와 세외수입의 증대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따로 붙임과 같이 '97년도 증명발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증명발급 현황

연번	제 증 명	건 수
1	물품납품 실적증명	15
2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증	10
3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증명	177
4	물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10
5	시유재산 대부(계속대부)신청	1
6	시유재산 매수신청	1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英相 委員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雄 孫英相 委員 발언해 주십시오.

○孫英相 委員 孫英相 委員입니다.

이 개정조례(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질의입니다만, 일반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증명이라든가 수수료 인상이라든가의 문제보다는 각종 공사라든가 구청에 관련된 입찰등록 참가자들 자격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각종 부실공사도 예방을 할 수도 있고 또, 비리나 부정도 일소할 수가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철저히 기준을 뒤야 할 것은 참가자격에 대해서 예컨대, 단종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보면 대부분이 사무실 하나도 없어요. 서류상만 장비가 몇 대이니, 포크레인이 몇 대이니, 인력이 몇 명이니 이런 요식만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참가업체를 확인해본 결과 겨우 어디다 전화 연락처 하나 놓고 입찰을 따가지고 하청에 또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이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부실한 공사는

당연합니다.

예컨대, 지난번 신길동에 모 도로개설 공사가 있었는데 하수관을 교체하고 도로공사를 하는데 아마 그 업체에서 원청자가 약 1억원 내외에 공사입찰을 봤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수구 하청을 얼마 주고 또, 도로개설하고 포장하는데 얼마 주고 또, 철거비용 얼마 주고 이리다 보니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공사가 아주 부실해졌어요.

그뿐 아니라 12억인가 그 이상 업체만 아마 하청을 주게 되어 있지, 그 이하는 하청을 못주게 되어 있을 거야. 하청 주라는 규정이 아마 없을 겁니다.

참가 입찰자들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을 한 번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에 입찰만 전문적으로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찰만 전문적으로 따서 동작구도 가고 서울시를 다 다니면서 이것만 따러 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만 따 가지고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또 재하청이 돼요. 거기에 또, 재하청이...

그러다 보니 이윤 마진이 없으니까 공사가 부실해지고 여기에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만 따고 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재무과 입찰 소관이 아닙니까?

입찰 참가자 자격에 대해서 기준을 둔다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忠雄 다음은 李明勳 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李明勳 委員입니다.

지금 孫英相 委員이 지적한 대로 2년 전인가 어느 업자가 절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토목공사를 한 사람이 거의 80%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입찰 낼 적마다 회사 이름을 바꿔서 낸대요. 그래서 또 하청을 주고...

현재 재무과장이 그 당시에 재무과장이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또 모르지만, 그 입찰 비리가 말도 못해요.

또 한 번은 주차장입찰을 보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강서구에서 봉고차로 여자들까지 실고 한 차 몰러 왔어. 그래서 떡값 명목으로 얼마씩 달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해서 얼마를 주니까 또 입찰포기하더라고. 그런 것이 바로